

# 환경 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이용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3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7. 21.

발의자 : 이용득 · 김현권 · 민병두  
박주민 · 서형수 · 소병훈  
안규백 · 원혜영 · 윤호중  
이동섭 · 이석현 · 이종걸  
임종성 · 전현희 의원  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·보전하기 위하여 20년마다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환경변화와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확대되고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져가는 현실에서 국가환경 종합계획의 중대성을 생각할 때 수립절차를 더욱 민주적·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이에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, 계획의 수립 시 지난 계획 평가를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6호 신설, 안 제17조).

##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한 국가환경종합계획(제16조의2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)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6.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

제17조제4항 중 “중기계획을”을 “중기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,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③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4조(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한 국가환경종합계획(제16조의2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)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
<p>제15조(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)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6. (생 략)</p>	<p>제15조(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)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</u>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
<p>제17조(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<u>중기계획</u>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</p>	<p>제17조(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중기계획</u>을 국회에 보고하고,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장 및 시·도지사는 이를 소관 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.
⑤ · ⑥ (생략)	⑤ · ⑥ (현행과 같음)